

원주시 보건소장 (개방형직위) 채용 공고

원주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의 「보건소장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개 모집하오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2일

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가. 개 요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인원	임용기간	직무내용
원 주 시 보건소장	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(개방형 4호)	1명	2년 *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소관사무 수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-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, 조사·연구 및 평가- 보건의료인 및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·관리·육성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·관리-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-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·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

* 임용기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나. 임용신분

-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, 승진,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
-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, 근무기간 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신분 유지

다. 관련법령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역보건법
-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
-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
2

응시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국 적: 대한민국
- 응시연령: 18세 이상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결격사유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(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
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자격요건

- 필수요건(의사면허 소지자)을 갖추고, 자격요건(관련학과 학력기준, 자격증 기준, 경력기준)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자

구 분			자 격 요 건
필수요건			-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
자 격 요 건	관련 학과 학력 기준	석사학위 이하인자	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
		박사학위 소지자	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·경력 2년 이상인자
	자격증 기준		-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·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「의료법」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·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
	경력 기준	공무원	-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-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		일반인	-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[관련분야] 의무·약무·보건·식품위생·의료기술·간호·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

가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최초 2년 * 근무실적 및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
- 기본 근무시간: 주 40시간 / 5일
- 복 무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
- 보험 가입
 -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**의무가입 대상**
 -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)

나. 보 수

-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시
 -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-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시
 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의 개방형 4호 연봉하한액(70,490천원)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
- ※ 연봉 외 수당은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지급함

<다음 페이지에 계속>

4

시 험 방 법

가. 1차 서류전형: 2026. 11. 13.[금] 합격자 발표 예정

-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까지 선발할 수 있음

나. 2차 면접시험: 2026. 11. 17.[화] 예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
- 심사내용

능 력 요 건	하 부 요 소
전문가적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◦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·분석 능력 ◦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
전략적 리더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◦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◦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
변화관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◦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◦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
조직관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◦ 업무개선능력 ◦ 자원활용능력
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◦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◦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

5

시 험 일 정

가.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

- 시험공고: 2026. 10. 22.(목) ~ 2026. 11. 1.(일)
- 원서접수: 2026. 11. 2.(월) ~ 2026. 11. 6.(금) 18:00까지
[(공)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접수, 마감 후 추가·수정접수 불가]
- 접수방법: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

【방문 접수】

- 접 수 처: 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 (대리접수 가능)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
- 접수 전 시청 1층 민원과(6·7번창구)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접수
 - ※ 응시수수료: 10,000원
 - ※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

【등기우편 접수】

- 주 소 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,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(무실동, 원주시청)
-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(택배·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)
-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(☎ 033-737-2224)
- 응시수수료(1만원)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
 - ※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
 - ※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예정

나. 면접대상자 공고: 2026. 11. 13.[금] 예정

다. 면접 시험일: 2026. 11. 17.[화] 예정
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11월 중

마. 임용[예정]일: 2027. 1월 중

※ 유의사항

-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한 예정일이며, 확정 일정은 추후 게시될 「서류합격자 및 면접 시험 공고문」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▷ 원주시청 홈페이지 > 원주소식 > 시험정보 >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
 - ▷ 전화,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인 확인 필수
 - ▷ 원서 접수 현황, 면접위원 섭외 지연 등 부득이하게 이미 고시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엔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

【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】

가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
- 응시 수수료: 10,000원
 - ※ 원주시 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,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- 수 입 증 지: 원주시청 1층 민원과(6번 또는 7번 창구)
 - ※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 동봉하여 발송 (정부수입인지 불가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(해당되는 경우 수입증지 대신 별도 증명서 첨부)

나. 이력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/ 증빙자료 없을 시 기재 금지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-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

다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
라. 직무수행 계획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
-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(전략)·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

마.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별지 제5호 서식 참조]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- 필수 기재사항 ※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
 - 근무기간*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급), 담당업무 누락 금지
 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
*근무기간

- 종일근무(주40시간) 시, 경력 전부 인정
-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
- 비상근,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

※ 기존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에 필수 기재요소가 누락된 경우, 응시자 제출 서식 별지 제5호 경력증명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

※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, 근무시간 등이 누락된 경우 경력 산출 불가

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
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- 경력 확인용으로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함
-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요구 가능함

사. 자격증 사본(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, 그 외 선택사항) 1부

아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취득증명서)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(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)

자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차. 주민등록초본 1부 [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]

카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제7호 서식]

타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 제8호 서식]

파.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[선택사항]

-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
-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

-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, 「공무원 연금법」, 「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이 적용됩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시험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한 후 시험을 진행합니다. (재공고인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당초 응시자는 별도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)
-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·미비, 응시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 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·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,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(☎ 033-737-2225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끝.